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52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소희·김위상

김선교 • 김석기 • 김승수

고동진 • 윤한홍 • 김종양

권영진 · 이달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참고사항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·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, 하도급거 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 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1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12(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) ① 수급사업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.
- 1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
- 2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
- 3. 그 밖에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12(기술자료 유용행위에
	대한 금지청구권 등) ① 수급
	사업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
	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
	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
	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
	<u>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</u>
	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
	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
	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
	께 청구할 수 있다.
	1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
	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
	2.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
	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
	3. 그 밖에 제12조의3제4항을
	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
	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